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다. 다만,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 - 3)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
2. 개별 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5항,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제1호	100만원	200만원	400만원
나.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제2호	100만원	200만원	400만원